

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규칙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제13조(교과목자료집) ① 내지 ② (생략)</p> <p>③ 전문과정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과목 자료집을 전공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교과목 자료집은 <u>5년간</u> 관리·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(신 설)</p>	<p>제13조(교과목자료집) ① 내지 ② (생략)</p> <p>③ 전문과정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과목 자료집을 전공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교과목 자료집은 <u>4년간</u> 관리·보존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 . .)</p> <p>④ <u>교과목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CQI위원회는 매학기 말에 개최한다.</u> (신설 2011. . .)</p>	<p>- 내용 개정</p> <p>·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평가단의 지적사항에 따라 개선시기 조항 신설 및 교과목 자료집 보존기간 기준변경으로 인한 수정</p>
<p>(신 설)</p>	<p>부 칙</p> <p><u>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- 부칙 신설</p>